

야외공연장 관리규정 시행세칙

제 정 2008. 03. 25
 개 정 2011. 11. 18
 개 정 2016. 01. 07
 개 정 2023. 02. 16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성남문화재단 야외공연장관리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신청 및 제출서류) ① 성남시 야외공연장(이하 “야외공연장”이라 한다)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“별지 제1호 서식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(이하 “대표이사”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 <개정 2011.11.18.>

1. 행사계획서

2.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

3. 공연, 행사프로그램(포스터, 전단, 팸플렛 등) 3부

(다만,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)

4. 행사 후 복구계획서(객석 청소 동원 인원, 장비 등)

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“별지 제3호 서식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의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8.>

다만, 국가 또는 성남시, 성남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.

② 삭제<2011.11.18.>

제4조(사용허가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,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

2.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

3. 문화예술 관련행사

4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<개정 2011.11.18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, 연극, 무용, 국악, 연예 등 순수문화예술 행사에 한한다.



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, “별지 제4호 서식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허가사항 관리)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 교부 시 “별지 제5호 서식”의 사용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용료의 납부)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사용료 미납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.

제7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종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표이사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< 개정 2011.11.18.>

제8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11.18.>

제9조(전기사용료 징수)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홍보물의 부착)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8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 <제정 2008.3.35.>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
〔별지 제1호 서식〕 <개정 2016.1.7.>

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신청서

단 체 명		대 표 자 성 명		사업자등록 번호 (생 년 월 일)	
단 체 의 소 재 지 또 는 대 표 자 주 소				연 락 처	
공 연 행 사 의 명 칭					
공 연 행 사 의 내 용					
사 용 기 간 및 시 간	년 월 일 (일 회)	시부터 시까지 시간)	출 연 및 참 석 예 정 인 원 수	출 연 인 원 : 관 계 요 원 : 예 상 인 원 :	명 명 명
사 용 시 설 및 설 비	기 본 설 비				
	부 속 설 비				
사 용 자 동 원 장 비 (설 비)					
주 요 경 력 및 연 혁 (지면부족시별지이용)					

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관리규정 제5조 및 시행세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성 명 : (인)

첨부 1. 행사계획서 1부.

2. 행사 후 복구계획(객석청소계획, 사용자동원설비 철수계획 등) 1부.

3.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사본 제출

4. 공연행사 프로그램(포스터, 전단, 팸플렛 등) 3부 제출

(단,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, 공연 5일전까지 제출)

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



〔별지 제2호 서식〕 <개정 2016.1.7.>

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료 감면신청서

단체명		대표자명		사업자등록 번호 (생년월일)		연락처	
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							
공연행사의 명칭							
공연행사의 내용							
사용기간 및 시간	년 월 일 년 월 일 (일 회)	시부터 시까지 (시간)	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	출연인원 : 관계요원 : 예상관객 :	명 명 명		
사용시설 및 설비	기본설비						
	부속설비						
감면신청사유							
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관리규정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, 날인)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							



〔별지 제3호 서식〕

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변경 허가신청서

단 체 명		대 표 자 성 명		연 락 처	
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 표 자 주 소					
공 연 행 사 의 명 칭					
공 연 행 사 의 내 용					
변 경 내 역	구 분	변 경 전		변 경 후	
	사 용 일 시				
	사 용 시 설				
	부 속 시 설				
	기 타				
변 경 사 유					

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관리규정시행세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
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성명 : (서명, 날인)

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

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23.2.16.>

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서

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관리규정 제5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.							
사 용 자	주 소						
	성 명						
사 용 목 적							
사 용 내 용							
사 용 시 간			년 월 일 시부터		년 월 일 시까지		
사 용 료		계		기본시설		부속시설	
기 타 사 항							
년 월 일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							



[별지 제5호 서식]

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대장

일련 번호	사용허가 일 자	사 용 기 간		사 용 목 적	사 용 자		사 용 료	비 고
		일 자	시 간		주 소	성 명		

